




2020 한국융합인문학회 전국학술대회

고령화 시대와 행복한 노년을 위한 융합적 고찰



일시 2020.12.18.(금) 14:00~16:00

방식 ZOOM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


주최 한국융합인문학회

2020년 한국융합인문학회 전국학술대회

- ▷ 일시: 2020.12.18.(금) 14:00~16:00
- ▷ 방식: ZOOM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
- ▷ 주제: 고령화 시대와 행복한 노년을 위한 융합적 고찰
- ▷ 주최: 한국융합인문학회

시간	발표 및 토론 일정
13:40~14:00	접수(입장)
14:00~1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양윤모(학회장)
【주제 발표】 <div style="text-align: right;">사회 : 고지혜(고려대)</div>	
14:10~14:50	<p style="text-align: center;"><'신중년'의 등장과 노인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자: 권미영(서정대), 박보영(극동대) ◦ 토론자: 강미희(성운대)
14:50~15:00	중간 휴식
15:00~15:40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과제와 개선방안 고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자: 박범기(한독교육복지연구원), 윤동경(가톨릭대) ◦ 토론자: 박지선(우송대)
15:40~1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윤리교육 ■ 정기 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결산 보고 및 2021년 예산 보고 ◦ 회칙 변경 ◦ 기타
16:20~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회사: 양윤모(학회장)

- * 학술대회 참가 방법: ZOOM 회의 정보를 ZOOM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연결
- 회의ID: 263 017 8796
- 암호: K11e154!!! (첫 글자는 대문자)
- ** 학술대회 자료집은 당일 ZOOM을 통해 배부될 예정입니다.



‘신중년’의 등장과 노인일자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권미영 / 서정대 사회복지행정과 강사
박보영 / 극동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신중년’의 등장과 노인일자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권미영 / 서정대 사회복지행정과 강사
박보영 / 극동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한국융합인문학회 2020 추계학술대회 발표
2020.12.18. Zoom Webinar

1

목차

1. ‘신중년’의 등장
2. 임계장, 고다자로 대표되는 노인일자리
3. 신중년의 위기에 대한 대응 (1) : 새로운 일자리정책
4. 신중년의 위기에 대한 대응 (2) : 평생학습

1. '신중년'의 등장

■ 사회적으로 규정된 '신중년': 사회적 의미

- 올해(2020년)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시작인 1955년생이 65세에 접어드는 시기.
 - 1955~1963년생인 1차 베이비부머는 727만명 이상으로 현재의 65세 이상 전체 고령 집단과 비슷한 규모.
 - 13년 뒤에는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 635만여 명이 '노인' 집단에 합류함.
- ☞ 1, 2차 베이비부머 사이의 출생자들까지 합치면 '노인' 집단이 약 1700만명에 이르게 됨.
- '젊은 노인'
 - 법정 노인 연령이 되 노인이라고 자각하지 않음.
 -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2020년 세계경제 대전망'에서 각국의 베이비부머를 올드(Young Old)라고 부르기도 했음.
 - 정부 정책 관련 문건에서도 50·60은 '중장년' '신중년' '장년' '예비 노년세대' 등 다양한 용어로 호명됨.

1. '신중년'의 등장

■ 사회적으로 규정된 '신중년': 사회적 의미 <계속>

-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7년부터 '중고령자'에서 '신중년'으로 용어를 바꿔 썼음.
 - 연령 기준으로 50~60대에 해당함.
 - 직장을 그만두는 연령대가 50대 초반이지만 실질적으로 은퇴하기를 원하는 연령은 72세로 나타났음.
 - 직장에서 그만두는 시기부터 실제 희망하는 은퇴 시기까지, 즉 50대 초반부터 이후 20년이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한국 50대 이상의 노후 준비 방법은 주로 국민연금임. 실제 은퇴는 빠르고 국민연금 지급 시기는 점점 늦춰지고 있어서 '소득절벽'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임.
- ☞ 국가정책의 측면에서 정확하게 타깃으로 설정하지 못했던 시기.

1. '신중년'의 등장

- 사회적으로 규정된 '신중년': 사회적 의미 <계속>
 - 한 해 평균 85만명이 금년부터 생산연령인구에서 노년층으로 넘어감.
 -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노년 인구(65세 이상) 30명 정도 부양하는 게 그런대로 괜찮은 상태임.
 - 현재는 100명이 22명을 부양하는 데 20년 뒤에는 피부양자가 60명으로 늘어남.
 - 1차 베이비부머가 전기 고령상태에 있는 지금 고령인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20년 뒤에 후기 고령자(85세 이상)가 되면 의료비와 연금 부담이 커짐.
- ☞ 이런 인구변화에 따른 정책도모가 필요하다.

1. '신중년'의 등장

- '신중년'의 특징 : 개인적 특성
 - 상당수가 고졸 이상의 고학력 도시생활자이고 소득과 소비 수준이 높음.
 - 자녀와 부모 부양의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지만 연금 수령 시점보다 빨리 주된 일자리에서 퇴장함(*평균 49.5세).
 -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을 준비함.
 - 아직 사회적으로도, 스스로도 노인이라 단정하지 않음(젊은 노인).
 - 비교적 혜택 받은 세대인 1차 베이비부머.
 - 이들의 부모 세대는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음.
 - 자녀 세대는 저성장·불평등으로 장래 전망이 밝지 않은 반면, 1차 베이비부머들의 유년기와 청년기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지만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산업화를 거치며 혜택을 받은 측면도 있음.
 - 민주화 등 사회발전에도 기여한 세대임.
 -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던 시기는 고도성장기로 자산 축적과 안정된 소득을 위한 기회가 이전 세대보다 컸음.
 - 베이비붐 세대는 삶의 질을 중시하고 행복에도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이전 세대와 질적으로 다름.
- ☞ 이들 세대의 고유한 특성과 역할이 있음을 인지해야 함.

1. '신중년'의 등장

▪ '신중년'의 특징 : 개인적 특성 <계속>

- 베이비부머는 1980~2000년 사이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 세대임.
- 실용주의적이고 자유로운 성향을 지닌 자녀 세대를 둔 만큼이나 때론 보수적이면서도 리버럴한 성향을 보이기도 함.
- 이전 세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은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다는 것임.
- 5060세대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이른바 '테크노 부머'라 불릴 만큼 모바일 기기에 능숙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관심사와 일상을 전세계 다양한 세대와 공유하는 데 익숙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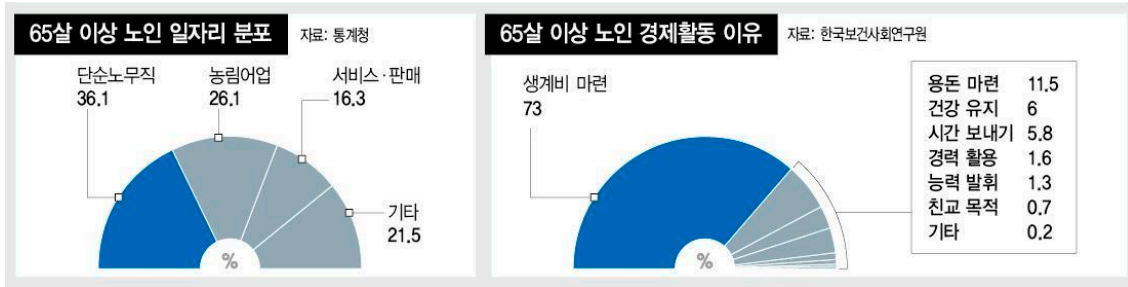
1. '신중년'의 등장

▪ '신중년'의 특징 : 개인적 특성 <계속>

- 신중년층은 격동이 시대를 거쳐 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 세대로, 노인 세대와 거리를 두는 경향도 나타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신중년의 노후 인식 실태와 시사점).
- 신중년층의 52.6%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74세'로 생각한다고 답했음.
- '75~79세'라는 응답도 20.8%를 차지했음.
- 기초연금, 지하철 경로 우대 등 주요 복지제도가 65세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신중년층의 약 3분의 2는 이보다 노인 기준을 더 높게 잡고 있음.
- ☞ 기존의 노인세대와 대비되는 신중년층의 고유한 특성에 주목하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함.

2. 임계장, 고다자로 대표되는 노인일자리

- 기존 5060세대의 일자리 : 임계장, 단순 노무직
 - 우리나라 노인들은 평균 72세까지 일하며 소득 간 격차도 심함.
 -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30.9%로 나타났음 (보건사회연구원, 2017, 노인실태조사).



- 현재 노인의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일함.
- 한국인 대다수가 50대 초반에 퇴직함.

2. 임계장, 고다자로 대표되는 노인일자리

- 기존 5060세대의 일자리 : 임계장, 단순 노무직 <계속>
 - 노인 비정규직 : 고다자(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퇴직한 63세 '젊지 않은 노동자가 퇴직 후 경비로 일하면서 쓴 시급 노동 일지

50대 이상 시급 노동자 5년 새 7배 증가, 노인 경제활동인구 421만 명 시대,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국가의 경비, 청소, 간병 등을 책임지고 있는 노인 노동자의 초상

아파트, 빌딩, 터미널 등에서 우리 걸을 지키며 구부정한 허리를 하고 푸른 작업복을 걸친 채 온갖 굵은일은 도맡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지방 소도시에 살면서 공기업 사무직으로 38년간 일하다 퇴직한 60세 노동자가 생계를 위해 시급 노동의 세계에 뛰어들면서 쓰기 시작한 3년간의 노동일지를 모았다. 저자는 아파트, 빌딩, 버스터미널을 전전하며 경비원, 주차관리원, 청소부, 배차원으로 살면서 겪은 시급 일터들의 팍팍한 현실을 담담히 써내려 감으로써 우리가 외면해 온 노인 노동자의 현실을 전면화한다. 임계장은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로 실제 저자가 버스터미널에서 일할 때 주변에서 그를 부르던 이름이다.

2. 임금장, 고다자로 대표되는 노인일자리

- 기존 5060세대의 일자리 : 임금장, 단순 노무직 <계속>
-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를 당한 60대 이상 노인은 31,661명으로 전년보다 3,237명(11.4%) 증가한 수치임.

연령별 산업재해 현황 ※2019년 자료 (단위: 명) 자료: 고용노동부

재해자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만3848	1만9877	3만2689	3만1661명
18살 미만 33 18~24살 4191 25~29살 6942				
사망자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56	368	604	827명
18살 미만 0 18~24살 19 25~29살 46				

- 현재 고령자들의 일자리 대부분은 기간제 계약직임.
- 기간제법은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를 지속적 업무에 고용하는 편법으로 악용되기도 함.
- 고령자가 실직했을 때 이들을 구제할 사회안전망 강화도 시급한 과제임.
-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급여가 낮은 단순 노무직 위주임.

3. 신중년의 위기에 대한 대응 (1) : 새로운 일자리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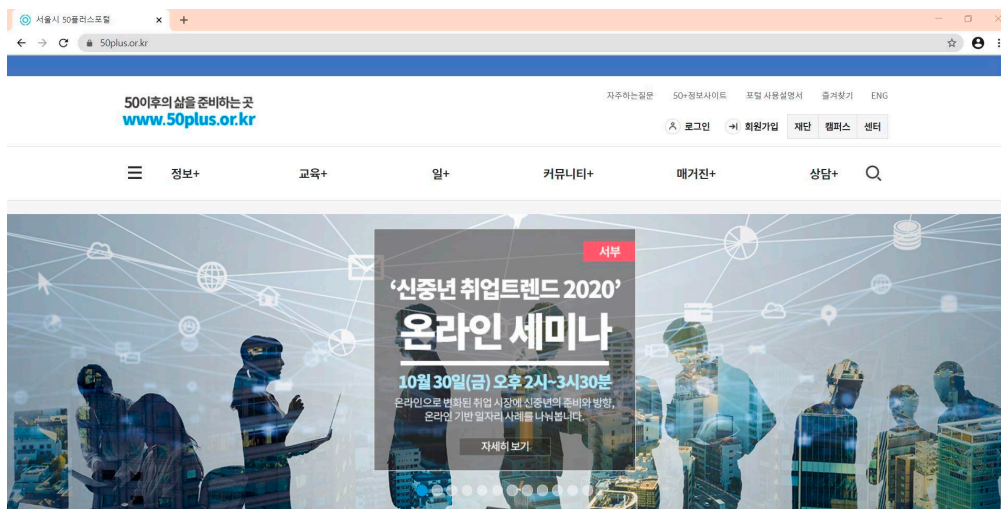
- 2004년 시작된 정부주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
- 일반적으로 일자리는 소득보전과 함께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함.
- 노인일자리는 2005년 3,500개에서 시작해 지난해 63만개, 올해 74만개(8월 현재)로 늘었음.
- 양적 팽창에 조응할 만큼 질적 개선을 이뤄내는 게 관건임.
- 전문가들은 노인노동의 의미와 역할을 재설정해 소득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 대상으로서의 노인이 아닌 삶의 주체로서의 고령 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3. 신중년의 위기에 대한 대응 (1) : 새로운 일자리정책

- 새로운 5060세대의 일자리
 -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차원의 고령화가 펼쳐질 전망이다.
 -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정부주도의 일자리 사업
 - 신중년 세대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지원사업 모델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점프업 50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진행한 도시재생 창업지원 프로젝트 사업. ▪ 새로운 서비스로 창업 분야의 새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됨.
굿잡 50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차와 함께 사회적 경제와 스타트업 영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 ▪ 민간 협력의 좋은 보기임.

3. 신중년의 위기에 대한 대응 (1) : 새로운 일자리정책



-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지금의 서울시50플러스센터가 됨.
- 프로그램의 예로 '서울50+ 인턴십'이 있음. 이는 50대 이후 신중년층을 위한 파트타임형 지원 프로그램임.
- 이른바 '50플러스'세대가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배우는 동시에 이전까지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생에 있어 두 번째 경력을 개척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3. 신중년의 위기에 대한 대응 (1) : 새로운 일자리정책

- 개정 <고령자고용법>의 시행으로 202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서는 퇴직 전 전직지원교육이 의무화되었음. 주요 사업장에서 '퇴직준비 프로그램'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4. 신중년의 위기에 대한 대응 (2) : 평생학습

- 신중년은 일자리 욕구가 강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정부에서도 신중년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부처별로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통합·총괄할 수 있는 주무부처 혹은 컨트롤타워를 찾기 어려움.
- 때문에 더 작은 단위에서 세밀한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중년 교육을 이끌어 나가고 있음.
- 이를테면 수강생들 간 네트워크 구축, 커뮤니티 형성 등을 지원해 교육과정이 끝난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이렇게 조직된 단체를 사회적 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 복지단체 등과 연결하는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함.
- 신중년 교육은 개인의 자아성찰부터 사회참여와 창업·창직 등 노동시장 재진입으로 통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김경래(2020). 신중년의 노후 인식 실태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87, 56-6.
- 이아영(2020). 신중년의 경제활동 실태와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287, 35-4.
- 지은정(2019). 지자체에서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하려면. 공공정책, 160, 56-5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노인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신중년의 노후 인식 실태와 시사점.
- 황남희(2020). 신중년의 경제 상태 현황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87, 6-20.

- 시사IN, 제683호(2020.10.20). [커버스토리] 젊은 노인의 시대.
- 한겨레신문(2020.09.07). 하루만 아파도 “출근 말라”... ‘고다자’ 된 노인 노동자들.
- 한겨레신문(2020.09.07). 일하는 고령층, 뒤받쳐줄 사회안전망 있다.
- 한겨레신문(2020.09.09). 노년의 삶 파괴하는 가난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노린다.
- 한겨레신문(2020.09.09). 고령화는 부양비 부담만 늘린다? 높은 교육·건강 수준 반영해야.
- 한겨레신문(2020.09.12). 학력 높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신중년’ 5060, 행복지수 높이려면?
- 한겨레신문(2020.09.14). “65살 인턴 됐어요” 인생 2막 시작하는 젊은 노인들.
- 한겨레신문(2020.09.14). 서울시·기업들 함께 ‘도시재생 창업·사회적경제 취업’ 지원.
- 한겨레신문(2020.09.19). 시니어 교육 뒤 ... 좋아하는 일로 사회참여 ‘인생경로 전환’.
- 한겨레신문(2020.09.19). “고령화 문제, 베이비부머 등 평생교육이 해법.”

감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과제와 개선방안 고찰

박범기(주저자): 한독 교육복지연구원 연구위원

운동경(공동저자): 카톨릭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과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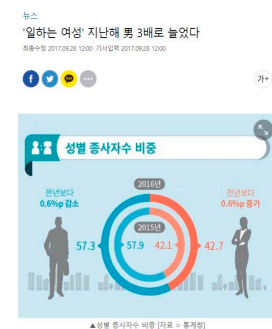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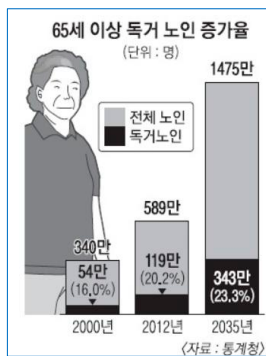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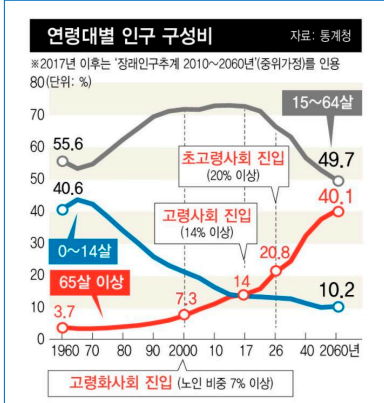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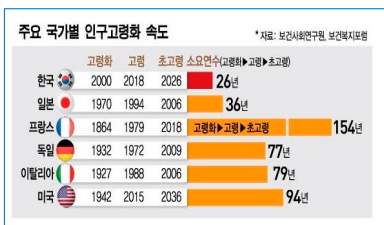
(2020- 하반기)한국융합인문학회 학술대회 발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과제와 개선방안 고찰 -

박범기(주저자): 한독 교육복지연구원 연구위원

운동경(공동저자): 카톨릭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과 박사과정

I. 들어가며



- 한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음 (2025년경)
-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의 증가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 그러나 그들을 돌볼 환경은 열악해짐
- 출처: 김민주·황준용(2019)

I. 들어가며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되는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정부차원에서 노인문제 해소 및 관련 가족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성 생김
- 이를 위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이 제정되고 시행됨
- 2020년 12월 현재 10 여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서론에서 제기한 초고령 화시대를 맞이하는 상황임, 이 상황 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 됨

-출처: 안명선, 박주현 (2019)

II.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분석(分析)

출처: 안명선, 박주현 (2019)

1. 법의 구조와 주요 내용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1조)

헌법 전문과 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등에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비롯하여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안명선·박주현,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 함은 '노인이 노령이나 기타 질병에 의해 그 활동이 어려울 경우 노인의 간병 또는 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제5의 사회보험을 말한다(이용석, 2008)

법의 구조와 내용

공적노인의료보장관련법 구조

영역	급여의 내용과 성격	관련법	대상
사회보험	단기적 건강보험급여 질병보험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일반 국민
	장기적 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노인
공공부조	생활곤궁지에 대하여 무각출 무상으로 의료보장	의료급여법	일반 국민
사회복지	노인의 최저 의료보장 실현	노인복지법	노인

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분석(分析)

1. 법의 구조와 주요 내용

법의 구조와 주요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 사회보장정책에 따라 국가가 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짐(법 7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기구로 장기요양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법 45조, 47조)
- 보건복지부는 5년 주기로 장기요양계획안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법 6조 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임(법 7조 2항)
-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와 지정은 시·군·구등 자치단체에서 정함,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장기요양기관과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기관 등에 대해 지정 취소할 수 있음 (법 31조, 37조)

출처: 안명선, 박주현 (2019)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의 법적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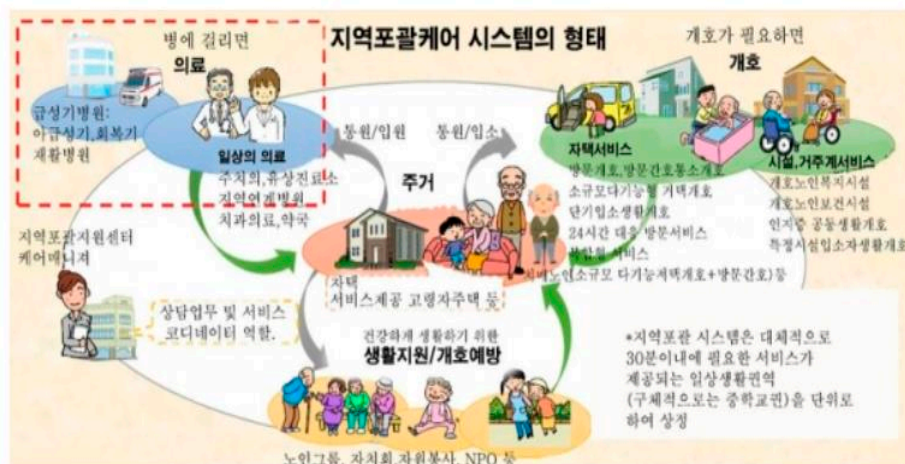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수행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 보험료를 부과 및 징수
 - 장기요양등급판정 및 등급판정위원회를 운영
 - 장기요양급여 관리, 평가, 급여관련 지원사항 담당하고 재가 및 시설급여 심사와 지급, 특별현금급여를 지급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등의 업무를 수행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은,
 -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지정,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폐쇄명령, 시설의 지도감독 기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5년단위로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관리비용을 일부지원, 노인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관련서류 검사

출처: 박석돈 외, 2015; 이혜승·유승현, 2012

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분석(分析)

2. 외국 사례 소개 및 한국에의 시사점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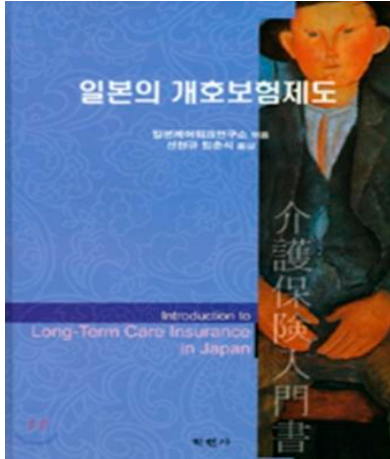


출처: mediwelfare, 2018

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분석(分析)

2. 외국 사례 소개 및 한국에의 시사점

1)일본



-초고령사회 문제를 우리나라 보다 20여년이나 앞서경험한 일본은 현재 치매노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기 위한 노인 인권을 목표로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치매 노인에 대하여 시설에 입소시켜 격리시키기 보다는 지역사회 및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시·정·촌에 주소를 등록하고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제1호 피보험자로 하고, 1~2등급의 요지원자와 1~5등급의 요개호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있다.

-보험료의 부담은 시·정·촌이 정하는 5단계의 소득 단 계별 정액보험료로 원천징수하는데, 각 의료보험제도의 부과 방식에 따라 납부총액을 산정한다. 사업주와 이 용자가 각 50%씩 부담을 하고 자영업자는 소득 및 균 등 비율 등으로 배분하여 의료보험료와 일괄 징수한다. 또한 의료보험가입자가 4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제 2호 피보험자로 구분하고, 노화의 원인이 되는 15종류 (중풍, 치매 등의 뇌혈관 질환)의 질환이 있을 경우, 개 호의 단계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및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면 수급권자가 된다.

출처: 안명선,박주현 (2019)

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분석(分析)

2. 외국 사례 소개 및 한국에의 시사점

2)독일



-독일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회보험으로 일차적인 대응을 하는데 사회보험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할 경우를 위해 예외 규정을 만들고 사회부조로 대응을 하고 있다. 노인에게 있어 장기요양보험 3대 사회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 장기요양보험) 중에서도 그 중요성이 사회적보호서비스로서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가고 있다.

-「수발상태의 위기상황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법」으로 1994년 “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공적 장기요양보험에 따르면, 공적의료보험의 피보험자는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보호를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된 자는 의무적으로 민영요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보편적인 제도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의 타인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로 선별주의적 제도의 특성을 혼합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출처: 김근홍(2020); 안명선,박주현 (2019)

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분석(分析)

2. 외국 사례 소개 및 한국에의 시사점

3)외국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일본은 피보험자를 노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40세 이상 모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이면서 시·정·촌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와 제2호 피보험자(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보험가입자)로 구분하였다.

-독일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이나 국적, 계층을 구분하지 않는 보편적인 제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대상자가 피보험자로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성격과 선별주의적 성격이 혼재 되어 운영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출처: 안명선, 박주현 (2019)

Ⅲ.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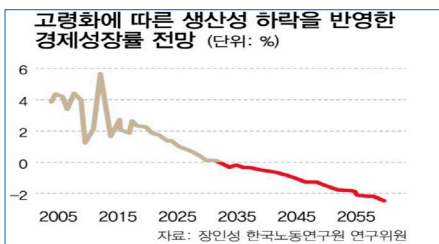
1. 재원 조달 방식(법 8조, 40조, 5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및 제40조, 제58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그리고 수급자 본인의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고 규정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사지시서 발급비용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 되어 2019년 현재 8.5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징수

- 하지만 노화에 따른 심신기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하되고 상태가 악화될수록 수급 대상자의 지급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비용절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의 동기와 전개가 미약하다는 제도의 내재적인 문제가 있음

출처: 안명선, 박주현 (2019)



Ⅲ.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1. 재원 조달 방식(법 8조, 40조, 58조)

건강보험료 재정 지원 및 본인부담률 개선이 필요함

-정부는 대상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전액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자의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 하는 것으로 시설 인프라 비용에 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하려면 전 국민과 요양급여 이용자에게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법 제38조(준비금) 제 3항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의 국가의 부담 부분에 추가(증액)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보직 하다[35].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8.51%로 보편 일률적으로 적용 부담하고 있으며, 수급자를 선정하고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선별적 적용이다. 이에 따라 수급자 본인의 부담금을 경제적 능력에 기초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별도의 보험료 징수 체제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의 준수가 필요함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지원하는 국가부담금은 2009년 355억 원, 2010년 340억 원, 2011년 402억 원, 2012년 587억 원, 2013년 493억 원, 2014년 376억 원, 2015년 601억 원 등 약3천154억 원에 이르나,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20%를 채운 적이 없으며, 2009년부터 2018년 결산까지 지원된 국고지원금은 4.3~7.8%에 불과하다[36].2 따라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위해 정부는 국고 지원금 법정 지원 기준을 준수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안명선, 박주현 (2019)

Ⅲ.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2.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권과 관리(31조, 37조, 61조)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건이 증가함

(단위: 개소, 백만원, %)

구분	현지조사 기관수	부당청구 기관수	조사기관 청구금액	부당금액	기관당 부당금액		
계	1,028	774	75.3%	541,546	23,501	4.3%	30
입소시설	452	310	68.6%	288,807	16,329	5.7%	53
재가시설	576	464	80.6%	252,739	7,172	2.8%	15

* 2015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현황(2016년, 보건복지부 제공)

(단위: 백만원, %)

부당청구 유형		부당금액	부당금액비율
계	합계	23,501	100
입소 시설	소계	16,329	69.5
	종사자배치 기준 위반	12,388	75.9
	종사자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2,177	13.3
	정원초과기준위반	1,122	6.9
	기타	642	3.9
재가 시설	소계	7,721	30.5
	허위청구(서비스 미제공·중량 청구)	3,529	49.2
	종사자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1,477	20.6
	방문목적 제공기준 위반	432	6.0
	기타	1,734	24.2

* 2015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현황(2016년, 보건복지부 제공)

출처: 안명선, 박주현 (2019)

Ⅲ.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2.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권과 관리(31조, 37조, 61조)

건강보험공단에 현지조사권 제공

-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장기요양사업의 적정운영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 불법 및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수급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제도

- 유사한 제도로 방문확인제도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간의 기간을 조사. 이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복지부에 의뢰하게 됨, 이에 요양기관에서는 보험급여와 관련된 조사라는 점에서 위의 두 제도가 동일한 제도로 인식, 요양기관 업무의 중복체감 및 법적근거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고 현재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부당청구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대상 범위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수급권자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만 65세에 도달하면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로 자동 전환되는데, 1일 최대 13시간의 추가 급여를 제공받는 것에서 1일 최대 4시간으로 축소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수반되어야 함, 이러한 정책은 수급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강보험공단에 현지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

출처: 안명선, 박주현 (2019)

Ⅲ.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3. 장기요양기관의 인권문제관련 조항 신설 필요함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요양시설 내 학대피해 노인 건수는 246건으로 2008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4년 노인학대 가해자 3876명 중 285명 (7.4%)이 요양보호사 등의 종사자로 2008년 62명과 비교해보면 약 4배 이상 늘었다. 2015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을 폭행하거나 폭언, 성범죄 등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하여 노인학대로 판정 받은 사건만 4년 새 9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 가해자의 99.1%가 시설에서 종사하는 의료인, 요양보호사 등인 것으로 파악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 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령정비 이전이라도 인권교육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2005년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

-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인권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시설 평가 기준이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설 및 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이 '노인복지법' 등의 상위법에는 없는 실정

출처: 남현주, 2019

Ⅲ.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3. 장기요양기관의 인권문제관련 조항 신설 필요함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 평가로는 입소한 노인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려움, 또한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인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필요, 경기도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노인인권지킴이가 직접 시설에 방문하여 학대, 인권침해 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과 인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시스템은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개선하고 수요자가 만족도가 더 높일 수 있을 것

-요양시설이 상기와 같은 인증을 받게 되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공신력을 줄 수 있어 재정의 효율성이 높고 서비스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강점이 될 것,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측면에서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부적합한 시설을 퇴출시키는 한편, 공신력 있는 인증 시스템 도입이 노인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출처: 안명선, 박주현 (2019)

Ⅲ.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4. 돌봄관리차원에서 타법(他法)과의 영역 조율(법 3조의 실제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돌봄차원에서 제정된 법 중 하나임, 돌봄은 정책적으로 커뮤니티케어의 구현과 맞닿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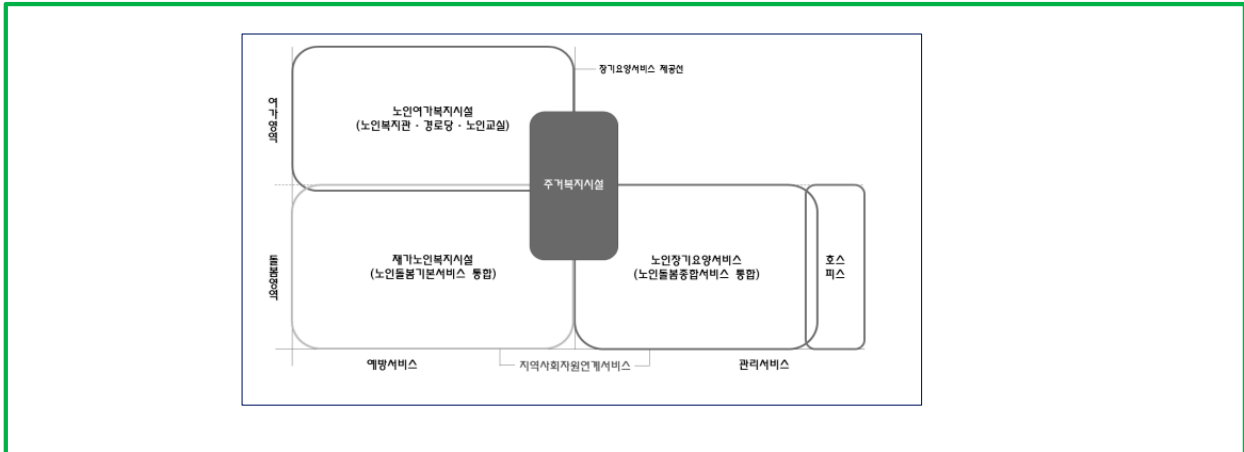
-특히 정부가 밝힌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에서는 '고령인구 등의 급증'으로 인한 커뮤니티 케어 주요 수요층인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범위 확대 및 이 외의 자에 대해서도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를 종래의 병원이나 입소시설 중심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돌봄형태로 개선하겠다고 함(보건복지부, 2018)



	방문요양(노인복지법)	방문요양(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및 별표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가목
급여내용	① 신체활동지원서비스(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② 가사활동지원서비스(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주변정돈 등) ③ 개인활동지원서비스(외출 시 동행 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④ 정서지원서비스(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① 신체활동지원 ② 가사활동지원 ③ 개인활동지원 ④ 정서지원 ⑤ 시설환경관리

Ⅲ.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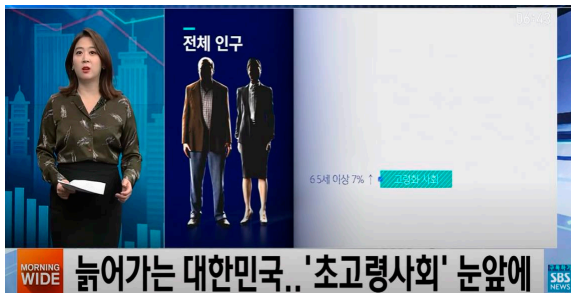
4. 돌봄관리차원에서 타법(他法)과의 영역 조율(법 3조의 실제화)



출처: 장봉석·박정연(2018)

IV. 나가며: 초고령사회의 전환에 대응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을 바라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었던 노인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특히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치매, 중풍등의 노인질병에 대한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 시대적 필요성을 충족시킴
- 그러나 법의 시행 결과 가족부담은 완화효과가 있었지만 수급자인 노인분들의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점들은 자주 노정되는 현실임--->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발제문의 과제와 개선방향이 이와 맥을 같이함
- 그리고 서두에서도 언급했듯 초고령사회의 도래가 급박함,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한바, 이는 전체돌봄시스템 하에서 관리적 돌봄으로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위치를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됨



참고 문헌

- 김근홍(2020). 독일 수발보험 관련법의 개정과 시사점. 노인복지연구, 75(1), 9-33.
- 김민주·황준용(2019).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지, 20(10), 395-405.
- 남현주(2019).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과제와 발전방향. 월간 공공정책, 163, 26-28.
- 박범기·강은희·이순덕·이승희(2018). 치매국가책임제도에 관한 소고: 도입과 쟁점. 사회적질연구, 3(1), 35-59.
- 박석돈 외(2015). 사회복지법개론(개정판), 양서원.
- 안명선·박주현(20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지, 19(8), 525-534.
- 이혜승·유승현(2012).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실태 분석.감사원 감사연구원.
- 장봉석·박정연(2018). 노인돌봄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 58, 87-126.
- 황정훈(20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돌봄 관리(Care Management)의 권리에 관한 법적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7(2), 61-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과제와 개선방안 고찰〉에 관한 토론문

박지선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급격한 증가. 가정에서의 노인돌봄 공백, 노인수발 비용의 부담,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 등은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 확대를 불러일으켰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계기로 노인돌봄은 가족의 전적인 부담에서 점차 사회화되어 왔다.

○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과제와 개선방안 고찰에 관한 발표자료를 살펴보면 서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주제로 현행 장기요양보험법상에서의 주요 이슈를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된다. 본 토론에서는 발표자료에서 제시한 이슈에 덧붙여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 발표자가 지적했듯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누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 이러한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는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부당청구를 들 수 있다. 인건비 과다수령, 서비스 제공시간 부풀리기 등 장기요양보험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인부담금을 낼 수 있음에도 감경 대상으로 선정된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시설 입소 노인 주소를 시설로 변경하고 자녀와 세대 분리한 다음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후 최저 보험료를 납입하여 본인 부담 감경 자격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 결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가 2016년 이후 적자로 돌아섰고, 앞으로 2년 후인 2022년에는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자나 인정자수는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할 수밖에 없다.

- 재정확보를 위한 다방면으로의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체계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재편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의 운영구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급여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 운영, 관리 권

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구조는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가져다줄 수밖에 없다. 관련하여 발표자가 제안한 바와 같이 업무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는 체계로의 재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장기요양기관의 인권문제 관련 조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동감한다.

- 지난 11월 초 보도된 KBS 뉴스(취재후 학대 논란에 재난지원금 빼돌리기까지... ‘충격의 노인요양원’)에서는 노인 환자 학대 논란부터,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의 돈을 유용하고 일부 환자들은 몰래 입소시켜 요양원이 법정 정원을 초과했다는 의혹 등을 취재하였다. 원칙적으로 요양원에서는 환자에 대한 신체 억제를 할 수 없다(물론 환자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거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일시적인 제한을 하는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예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 최소 닷새 동안 사실상 24시간 환자를 결박해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판정된 요양기관도 있다. 어쩔 수 없이 신체 억제를 하더라도 2시간마다 환자 상태를 관찰하면서 억제를 풀어주는 휴식시간이 있어야 하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를 변경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요양원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보호자가 없어 요양원 측이 관리하던 기초생활수급 환자의 지원금을 유용하거나 직원 계좌로 옮기는 일도 적발되었다.

- 대체로 요양원 이용자들은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거나 와상 상태로 요양원 생활에 불편함이 있거나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보호자에게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더더욱 클 수밖에 없다. 특히나 올해와 같이 코로나로 기관으로의 접근이 어렵고, 가족 면회조차 제한된 상황은 기관에서의 돌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인권유린이 극히 일부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해당 사례들이 마스크 등을 통해 빈번히 오르내리는 이상 법적, 행정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발표자의 제안처럼 인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보수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별 기관과 해당 종사자들이 인권의식과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종사자들이 돌봄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놓칠 수 있는 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또 한편으로는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인권 측면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본다. 케어매니저의

계획수립과 모니터링, 다전문영역의 협업체제는 개별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놓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돌봄노인의 학대나 인권 훼손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뿐만 아니라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의 인권문제도 중시되어야 하는 한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규정된 서비스 외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가정부로 인식하는 등의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정서적 폭력, 언어 폭력, 성희롱 등 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정서적 소진 및 이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요구된다.

○ 발표자가 네 번째 과제로 제안했듯이 노인돌봄과 관련한 법 간의 중복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각 법이 목적하고 있는 바를 명확히 살리고, 법 간의 관계성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발표자료에서 표로 제시했다시피 노인복지법상의 방문요양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방문요양에 대한 차이가 거의 없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과 노인복지법 개정 시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이다(장봉석·박정연, 2018).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불분명한 경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발표자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안이 있다면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 또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은 어떻게 보면 등급자를 양산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도 한다. 관련한 부작용으로 신청 후 현장조사 시 등급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또는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등급외자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무래도 노인이다 보니 당장은 등급외 판정을 받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등급을 받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노인 개인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최대한 오랜 기간 건강하게 자립 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회적으로는 재정적 압박이 크다는 측면에서 보면 등급 진입을 늦추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의 개입서비스 등 관련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실천하는 요양보호현장 최전선의 요양보호사 양성 및 처우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타 국가와 비교한 여러 연

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나이 제한 없이 240시간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일본 개호복지사의 경우, 2년제 전문대학 과정 또는 4년제 사회복지계열 대학교 과정을 통해 1,80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보수교육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 검증도 안 되고, 각 기관에 맡기다 보니 교육내용의 문제, 교육 만족도 문제가 나타나며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 요양보호사로의 진입벽은 높지 않지만(2019년 합격률 89.7%), 2017년 현재 전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가 약 150만 명인 것에 대해 실제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 수는 340,624명으로 노동시장 참가율이 매우 낮다.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는 것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2018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351만 원)과 비교했을 때 요양보호사는 225.5만 원으로 64.2%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이러한 이유들로 다른 직에 비해 요양보호사의 경우 고령, 여성 편중적인 현상이 두드러진다. 앞으로도 장기요양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뿐 아니라 인구학적으로 편중된 집단의 활동처가 아닌 다양한 계층이 활동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 정리하면, 요양보호사 양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적절한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강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관리·감독 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측면에서는 임금수준의 향상, 시설에서의 적절한 인력배치 등이 필요하다.